



이달의 교통뉴스

1. 운전면허 3종으로 단순화

경찰청은 현재 모두 7종에 이르는 운전면허의 종류를 오는 2005년부터 대형, 중형, 소형으로 단순·체계화시키는 운전면허 종별체계 개선안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4륜 자동차의 경우 현행 1종 대형은 대형으로, 1종 보통은 중형으로, 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바뀐다.

6개월 이상 소형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중형면허의 응시 자격을 주고 실기시험용 차종도 현행 1t 트럭에서 4.5t 타이탄급으로 변경하여 난이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2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중형과 소형으로 세분화되고 배기량 50cc 미만, 최고 속도 25km 이하로 운전하기 쉬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모페드 등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50cc 이상의 2륜 자동차의 경우 중형면허로 규정하여 반드시 이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복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면허로 다른 차종을 운전하는 등 사실상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유형의 차종을 현행 종별기준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종별체계를 단순화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두 종류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사고 등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중복면허를 동시에 취소키로 하였다.

2. 초보운전자 벌점관리 강화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벌점 31 점

이상이 될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행 누계 121점 이상의 면허취소처분도 91점 이상으로 초보운전자에 대한 벌점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2005년부터 일정 벌점기준 이상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초보운전자 특별 관리방안'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는 2년간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내에 벌점 31점 이상 60점 이하를 부과받을 경우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 7시간을 이수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벌점 31점 이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초보자가 다시 벌점 30점 또는 누계 6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은 2배가 늘어난 1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기간 15일이 삭감되고 교육을 받지 않거나 누계점수 9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3. 중고차 거래시 사고이력서 첨부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에는 공인기관이 확인한 사고이력서 첨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매업자가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 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끊

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에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 첨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고이력의 확인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사이트(www.carhistory.co.kr)의 자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해 전국 중고차 거래량은 189만대로 이중 매매업자에 의한 거래가 111만대에 달해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중고차거래 증감 추이도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성능점검과 관련된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시에도 새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 5분이상 차공회전 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44만대(2000년말 기준)가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925억원의 연료가 낭비되고 1,116t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공회전 장소로는 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등이었고 장시간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내년 1월부터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010곳, 자동차 전용극장 6곳 등 모두 1,620곳이며 2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의 공회전 시간은 휘발류와 가스, 알코올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각

각 제한되고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승용차 및 4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 및 4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이어 부산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내년 7월부터 5분 이상 엔진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5. 수원역~병점역 구간 연장 운행

철도청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기도 수원역까지만 운행해오던 수도권 전철을 지난 4월 30일부터 세류역을 거쳐 화성시 병점역까지 7.2km 연장운행하였다.

이는 지난 96년 착공해 오는 2004년 말 완공되는 수원역~천안역간 2복선 전철화 사업 중 수원~병점역 구간이 먼저 개통된 데 따른 것으로 병점역의 열차 출발시간은 오전 5시 5분(일요일과 공휴일은 5시 30분) 막차는 오후 11시 37분이고, 도착시간은 오전 5시 48분(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6시 17분)부터 0시 29분까지이다. 

